

의안번호	2218931
의 퇴 인	곽상언의원
회 답 일	2026.6.10.
추계번호	26B2621
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 (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 단지의 조성·운영 등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·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<u>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(제1항) 1.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, 전문인력 양성, 창업·사업화 지원,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 연구·진흥 시설 2. 물기업의 기술 검증, 제품 인증 시설 및 실증화 시설 3. 물기업 집적단지 4. 그 밖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	재량규정
2	안 제23조의2(성과평가 등) 신설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기업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물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,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주기, 내용, 절차,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 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15조 (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 단지의 조성·운영 등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3조의2 (성과평가 등)		

2. 상세 사유

가.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·운영(안 제15조)

□ 개정안에 따라 물산업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2019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진흥시설을 갖춘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대구광역시 국가산업단지에 조성하였으며, 2025년부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되어 운영 중임

－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2026년 기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비 및 입주 기업 지원 등에 따른 예산은 304억원임

[표 1]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주요 시설 현황

구 분		규 모	주요 시설
실증화 시설	실증플랜트 ·수요자 설계구역	·지상 1층 ·연면적 24,951㎡	· (실증플랜트) 5,000㎡/일 정수 2,000㎡/일, 하수 1,000㎡/일 폐수 1,000㎡/일, 재이용 1,000㎡/일
	종합관망 시험시설	·지상 1층 ·연면적 963㎡	· 고가수조, 회수조, 공동구, 종합순환관망
진 흥 시설	물융합 연구센터	·물융합연구동내 ·연면적 11,956㎡	· 임대용 연구시설, 실험실 등
	글로벌 비즈니스센터	·지상 6층 ·연면적 14,718㎡	· 홍보전시관, 운영기관 사무실, 임대사무실, 정보화센터, 편의시설, 게스트하우스
	워터 캠퍼스	·지상 4층 ·연면적 5,620㎡	· 도서관, 식당, 강의실, 창업보육실 등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[표 2]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예산 현황 (최근 5년)

(단위: 억원)

구 분	‘21	‘22	‘23	‘24	‘25	‘26
계	229	253	262	297	271	304
운영비	229	253	189	174	176	177
기업지원비	-	-	73	123	95	127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- 개정안이 시행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물산업 공공기관도 단독으로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·운영하게 될 경우, 물산업 공공기관의 사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가 해당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 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
 - 예를 들어, 물산업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·운영할 경우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 제37조¹⁾에 따라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음

□ 다만,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물산업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및 지원수준과 해당 기관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나. 성과평가 등(안 제23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기업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물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,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및 예산은 [표 3]과 같음

[표 3] 물기업 지원사업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'26년 기준)

세부사업 (내역사업)	사업명	사업내용	예산	수행 기관
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(혁신형 물기업 지정·지원)	혁신형 물기업 지정·지원	글로벌 물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우위가 가능한 중 소기업 선정 및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여 R&D 및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	4,500	한국 물산업 협회의
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	물산업 실태조사	주요 진출 유망국 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을 통한 진출전략 수립 및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	375	

1) 제37조(국고보조)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.

세부사업 (내역사업)	사업명	사업내용	예산	수행 기관
(물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)	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			
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(해외 물시장 개척 지원)	민관협력 해외진출 시범사업	정부-공공기관-물기업 간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,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, G2G 협력, 기술·행정분야 등 지원	230	
	물산업 동반성장 여건 조성	해외 물시장 기술테스트 및 현지 기술검증 지원, 국제공동 물분야 기술개발 협력 시범사업, 전문가 초청 협력세미나 개최 등 판로개척 지원	500	
물산업정책 및 국제협력 (기타 물산업 정책 지원)	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	국내 물분야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및 향후 물분야 국제협력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, 국제 업무 수행 소요비용 등	1,474	

주 :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예산으로 수행 중인 사업 현황이며, 기관 자체 사업 등 별도 지원 사업 존재함

자료 : 기후에너지환경부

□ 다만,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성과평가의 방법·대상·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개정안에서는 성과평가의 주기, 내용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